경기교육운동연대 '꼼'
2010년 하반기 및 중장기 활동방향 모색을 위하여

정책팀(100817)

Ⅰ. 2010년 하반기 ~2012년 교육정세의 기본구조

1. 2010년 교육정세의 추이

- 2007년 대선, 2008총선에서 승리한 이명박정부와 보수진영은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중의 생존권 투쟁과 저항을 '공안적 탄압-파시즘적 탄압'으로 제압하고 있음.

- 교육부문에서 이명박정부는 '국립대민영화 추진- 자율형사립고체제 출범- 교원평가, 일제고사 전면시행' 등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수립하였음. 동시에 일제고사, 시국선언,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 탄압,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집요하게 전개하였음. 심지어 '전교조/반전교조의 구도'로 전체 지방선거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기까지 하였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개편과 공안적 탄압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음. 한나라당은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 민주·진보진영은 6개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에서 교육감진출에 성공하였음.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이후 전당대회, 청와대, 정부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종시법 수정안 부결, 정치사찰 쟁점화 등으로 정국주도력은 약화되고 있음. 또한 6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정책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개편노선과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개편노선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 질 것임.

- 7월 일제고사, 교원평가의 일단락
대체수업여부를 둘러싼 갈등,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정행위 등으로 일제고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타격을 받았으며, 교원평가도 낮은 참여, 학생, 학부모평가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음. 7월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일제고사, 교원평가를 둘러싼 공방은 점점 확대되고 증폭될 것임.

<민주·진보교육감 등장의 의미와 향후 관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선대본을 구성하고 민주당을 견인하면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음. 교육감들의 공약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에 반대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들의 MB교육에 대한 반대, 공교육체제의 변화요구가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진보교육감이 교육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선거과정에서 진보적 교육의제들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였던 점 등으로 인해 진보교육감 당선자 중에서 진보진영과 결속력이 약한 경우 향후 교육청운영에 있어서 동요할 수밖에 없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만으로 공교육의 방향전환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음.

⇒진보교육감과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를 변화시켜 가야할 것이지만 교육노동운동진영과 긴장, 갈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임. 따라서 교육운동은 첫째, 대중운동을 통해 교육부와 전선을 강화하고 둘째, 대중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주·진보교육감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2010하반기~2012국면 성격

- 2010년 하반기~2012년까지 이명박정부는 청와대, 정부 등의 개편을 통해 정국주도능력을 회복하고 신자유주의재편을 지속화하려 할 것임. (7.28일 보궐선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임)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총선과 대선 등의 권력개편기의 정치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시도는 한계에 봉착하고 레임덕 현상에 직면할 것임. 또한 2012년에는 대선 후보,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의제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것임.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사회적으로 부각된 교육적 쟁점들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공약화에 나설 것임.

- 이명박정부(교과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편-교육운동진영의 교육공공성강화운동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 6.2 교육감선거이후에는 집권초기 파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교육의 공세가 정점을 찍고 정체, 하강하는 국면, 진보진영이 교육정책에 대하여 개입력을 강화하면서 투쟁을 상승시키는 국면임.

- 이명박정부는 2010년이후 국립대학의 민영화전략을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등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고, 자사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일제고사 결과 공시, 교원평가의 강행을 통해 신자유주의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려 하고 있음. 교육부는 2010~2012년의 3년간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정책의 현장 착근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2010~2012 교육부의 주요정책 과제>

정책과제	2010년 이후 추진계획
학교자율화 및 다양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고 추가 지정
교육내용 선진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11년까지 완료) ▪학점제, 수준별 수업 등 일반계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평가 및 대입전형 선진화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 ▪**학업성취도평가** 내실화, **학교별 성취수준('10.하반기) 및 향상도('11) 공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 보장 ▪공정성·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학습자 부담경감을 위한 **수능체제 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사교육없는학교 지원대상 확대('09년 472교→'12년 1,000교) 및 내실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2,3급) 개발**, 시범평가 후 '12년부터 본격 시행
대학교육 선진화	▪국립대학 법인화 및 부실경영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추진 ▪대학원교육 선진화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도모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2010.3.17

- 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공안적 탄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6.2지방선거이후의 반이명박전선이 확인됨에 따라 탄압의 수위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음. 주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탄압으로 2008~2010년 대중적인 활동력은 위축되었으나, 6월 교육감승리 이후 대중 동력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일반교사대중의 우호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조합의 자신감과 교사대중의 변화의 요구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 이러한 양상은 2012년 권력개편기에 다가갈수록 보다 분명해질 것임.

- 전체적으로 2010하반기~2012년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로 조성된 정치지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력개편기로 접어드는 시기임. 따라서 신자유주의공세의 동력이 정체, 하강하고 진보진영의 교육공공성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공세적 국면이 될 것임.

Ⅱ. 공세적 국면에서 교육운동 방향과 과제

1. 교육운동의 2대 기조

○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정착화, 안정화 시도를 깨뜨리고, 대중적 투쟁과 교섭을 통해 경쟁과 통제가 지배하는 학교를 민주적공동체로 혁신하여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함. 특히 6개 시도교육청을 지렛대 삼아 교육공공성 강화운동을 확대함.

○ 교육의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공교육개편안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전개. 공교육개편의 대안을 2012년 총선, 대선시기 쟁점화하고 대선이후 공교육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함.

2. 교육운동진영의 과제(2010-2012)

○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안정화시도를 파탄냄.
2010년 자사고, 2009개정교육과정, 교원평가, 일제고사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킴. 특히 교원평가, 일제고사의 경우 대응수위를 높혀 정착시도를 깨Em림.

-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가 7월에 실시된 결과 예상했던 교원평가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학생, 학부모, 동료평가의 신뢰성, 타당성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임.

"교원평가 졸속 운영... 불이익 걱정돼서 제대로 평가 못해" 학부모들, 교과부 비판'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도가 졸속 운영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주호 교과부 차관과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한 홍보·준비 부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우려돼 평가를 제대로 못 하겠다", "평가문항이 적절치 않고 평가대상자가 많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A학부모는 "주변 친구 엄마들로부터 '비밀 보장되는 거 맞아?'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모니터단인 우리도 불안한데 다른 학부모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B학부모는 "아이 학교의 경우 학부모 평가 참여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010.07.17)

학부모들 "잘 모르는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방학을 앞둔 일선 학교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장이나 문자메시지로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얼굴도 모르는 교사를 평가하기 어렵다" "누가 볼지 모르는데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가 학부모들의 저조한 참여와 불이익을 우려한 왜곡된 평가로 파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료평가에 불참하는 교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전문성과 스타일이 다른데 1학년 국어선생이 3학년 영어선생을 평가하는 게 쉽겠느냐"며 "교사들에게 일시적

인 긴장감과 경쟁심을 불어넣을 순 있겠지만 한계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평가 성공은 학부모 참여율에 달려있다”며 학부모 참여율이 50~6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일선 현장에서 보고되는 참여율은 20~30%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경향신문.2010.07.17)

-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원의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출되고 있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서술식 평가를 제안하고 있음.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 논의로 쟁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교원평가, 줄세우기 아닌 수업평가로 바꿀것” 전북교육감 김승환 인터뷰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평가 폐지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다. 시행규칙 폐지 일정도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교원평가를 완전 폐지하는 것인가,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것인가?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이를 수업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이 수업의 수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의 교원평가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교원 줄세우기다. 그래서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 내 아이가 고교 1학년이다. 학생·학부모가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고 있다. 지금 교원평가는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원과 아이들 사이에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런 교원평가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피로도만 더 높일 뿐이다. 전북만이라도 제대로 된 평가작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교사 수업평가(교육평가)를 해야 한다. 계량화해 점수가 나오는 것보다 토론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2010.07.12)

"교원평가 일단 수용하지만 실패 가능성 커" 교총신임회장 안양옥 인터뷰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일단 수용하겠다. 하지만 현행 평가방식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 절차부터 잘못됐다. 교사 스스로 평가한 뒤 동료가 평가하고 학생이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학부모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학생 학부모부터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교사 스스로 깨닫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결과지향적인 평가는 안 된다."
한국일보. 2010.07.15

- 2010년에는 교육부의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강원, 전북교육청이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일제고사의 전선이 ‘교육부⇔교육노동운동진영’뿐만 아니라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형성되었으며,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2008년 투쟁의 수준으로 복원되었음. 또한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 및 인사반영 등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평가에 대한 부정사례들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제기됨으로써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신뢰성,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교사가 정답 알려줬다" 일제고사 부정행위 의혹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과도한 성적 올리기 경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학사 파행이 일어난 것에 더해 이번에는 시험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6일 충북 제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이 학교 교감이 학생에게 문제의 답을 알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15일 저녁부터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과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A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B형이 답임을 재차 확인해 기재하도록 알려줬다는 것이다.(노컷뉴스.2010.07.17.)

- 평준화체제를 해체하고 교육양극화, 계급불평등을 심화하는 자율형사립고, 외고등의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폐지투쟁으로 발전시킴. 전북교육청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를 진행 중임.

자율형사립고와 전북 교육계의 논란. 취소결정 전북교육청, 교과부와 '삐걱'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그는 당선되자 사실상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고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공식화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율고는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일찌감치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일관되게 "특목고는 물론 자율고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시키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연합뉴스 2010.08.02)

○ 전교조에서 공세적 국면에 조응하는 투쟁노선을 세워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며,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기반에 더하여 대학교수, 대학생, 교사, 청소년의 연대망을 확실하게 꾸려 공공성에 입각한 공교육의 개편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

공교육의 근본적 재편을 위하여 '대학-고등학교' 개편을 중심으로 학교제도, 입시제도를 공론화하고 공교육개편의 담론공방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함(⇒2012년 대선공약화의 이론적, 내용적 준비). 이를 바탕으로 '대학공공성강화-대학평준화-고교통합화[1]'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사건화'하여 이를 현실적인 쟁점으로 부상시킴.(⇒대선 공약화의 물리적 힘으로 작동하도록 추동)

<공교육개편의 중심의제>

○ 대학-고등학교의 구조개편을 공세적으로 이슈화시킴-대학평준화,대학무상교육,대학공공성강화등 대학의 과제와 외고-자사고 폐지(자율고 또는 일반학교로 전환), 고교통합화 추진 등 초중등교육의 과제를 결합하여 통일적인 개편방안을 제출함.
○ 초중등교육과정의 진보적 방안을 제출함. 2009년 개정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뛰어넘는 참교육과정을 제출함.
○ 학교의 민주적 운영, 소통체제 확립, 기본인권신장 등 새로운 학교의 상을 바탕으로 학교혁신 추진
⇒공교육개편 방향을 정세적 상황에서 발전시켜 현실에서 쟁점화 하도록 함.

<범교연, 입시국본의 핵심사업>

- 범교연, 입시국본은 9월 하순 대학생, 청소년, 강사, 교수, 교사, 학부모등이 참여하여 '대학공공성강화 대학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광범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학개편 및 대입제도 등 교육개편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2011초까지 대학입시폐지, 사립대학교 구조조정저지, 대학등록금인하 및 무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실천행동을 조직할 계획임.
- 지역공실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역단위에서도 활성화

<학교혁신>

-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등을 참교육이론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혁신함. 학생의 지적, 실천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과정, 협력적 학습과 개별학습에 근거한 교수-학습의 혁신, 학생의 발달을 지향하는 평가 등을 도입함.

- 경쟁과 통제로 인해 긴장과 갈등, 잡무가 증가한 학교들을 전반적으로 혁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학교선택제, 학교비평준화체제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중단시키고 보편적 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를 혁신함.

1) 고교평준화의 진보적 형태로 1단계는 외고, 자사고 등을 일반계고등학교의 위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2단계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통합함.

Ⅲ. 2010년 단위 별 투쟁 방향

1.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1)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교원 운용실태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운영 체계는 정규교원과 계약제교원으로 분류
- 정규교원 :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선발시험등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된 교원
- 계약제교원 : 기간제교원,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계약에 의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교원, 이중 기간제교원은 정원내,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등은 정원외로 임용가능 여기서 분류기준에 의하면 임시강사는 그 성격상 기간제교원의 분류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며, 12년간 법전에도 없이 운영되다가 처음으로 계약제교원으로 2003.2.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전임강사보다 하향조정.

◎ 경기도 공립유치원
- 2000.5월 이후부터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정원 내에서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와 정원외로 임용하는 강사(임시강사 포함)를 임용한다고 명시
- 정원 외로 임용하는 강사에는 2000년까지 임용된 임시강사와 2000년 이후 임용되는 전일제 강사, 시간제 강사 두 종류

(2) 임시강사 차별 현황[참고자료1]
1) 신분면
◎ 2009년까지 임시강사는 1년 단위 계약직 교원, 1년씩 재계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규교사 발령시 해임
◎ 임용권자가 학교장, 학교장의 명령에 복종
◎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임시강사를 소멸하기 위해 정규교원이 발령되거나 임시강사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해임.
◎ 정교사 발령 시 정원이 허락할 경우에는 관내에서 이동이 가능, 교장들이 자신이 임용권자임을 이유로 임시강사의 배치에 대해 불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짐
◎ 관외이동일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이유로 관외 이동 불허
◎ 경기도 교육청은 자동 계약갱신 되어오던 것을 매해 계약서 강요, 매년 관리지침 수정

2) 복무면
◎ 26호봉 상한선
◎ 동일 학교에서의 경력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
◎ 포상에 제한, 자격연수 불허
◎ 육아휴직·병 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 불허
◎ 연차휴가나 병가는 연속근무년수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불허

(3) 향후 투쟁방향
◎ 신분안정을 통해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
◎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의 원칙> 확립
◎ 시. 도 교육감(교육장)의 실질적인 임용 권리 행사
◎ 정규 교사에 준하는 신분보장
◎ '공립유치원 계약제 지침' 폐기 또는 수정
◎ 일정기간(3년)이 경과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정규직교원으로 임용

(4) 향후 투쟁 계획
◎ 임시강사 비회원 조직
◎ 회원의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전개
◎ 교육청과의 임시강사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 단위 구성,
◎ 학교 내 비정규직·정규직 조직화 사업
◎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 투쟁(정원확보와 유아교육 전반적인 정책 문제)

2. 평등세상을 상상하는 한신대 학생해방 공동체(준)

(1) 2010년 경기지역 대학 상황
◎ 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일환으로 대학 구조조정 진행
◎ 경기지역 대학들 학과통폐합(돈이 되는 과들만 살아남는) 구조조정
◎ 대학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지식 상품
◎ 대학에 기업의 경영논리를 도입하고 경쟁이데올로기를 강화, 대학/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
◎ 2010년 대학생 투쟁은 매년 그렇듯 등록금 투쟁.
◎ 2010년 등록금 투쟁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수정에 대한 운동과 등록금 인상 반대, 동결
◎ NL총학(한대련)은 등록금을 합리적 책정 요구
◎ 대학생 교육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선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개격파 당하고 있는 상황

(2) 2010년 투쟁 방향
◎ 6%등록금인상에 대한 교육투쟁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등록금 인하운동
◎ 교육은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 무상교육
◎ 교육비용을 취업 후 임금을 담보로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반대
◎ 행진, 학사정연, 사노준학생모임등의 좌파 학생단위들과 함께 연대, 대학생 공동행동 모색, 범교연/경기교육공투본등의 단체들과 연대

3. 청소년

(1) 2010년 청소년 상황
◎ 경기지역에서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 전개
◎ 2009년 아수나로 수원지부(준) 구성, 2010년 정식지부로 승인

(2) 활동 방향
◎ 학생인권조례
-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
-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 주도하에 제도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 한계
-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줄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일제고사
- 일제고사 투쟁을 아수나로 혹은 청소년 단체에서 일제고사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호소
- 더 이상의 투쟁전략상의 방법 고갈과 캘린더 사업
- 청소년단체로서의 역량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개학시즌 학교 앞 선전전
- 4,5월 즈음의 지방선거 대응(기호 0번 청소년 가상후보 출마와 선거 운동)
- 낙선운동과 선거법 불복종운동 검토
- 후보에게 정책제안
- 수능거부선언 (전국적 사업)/여름까지 50명 정도 조직

◎ 2010년 하반기 활동 계획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학생인권조례 전국운동본부(준)에 본회 서울지부, 광주지부는 이미 참가 중.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본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연대도 중요하지만, 본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학교 앞 캠페인이 가장 낫긴 한데…….
운동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주민 발의가 불가능. 주민 발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안(案)을 세우는 것이 중요, 지부별로 논의가 필요하다. 본회라면 어떤 조례안을 만들지, 어떠한 내용이 조례안의 마지노선인지. 8월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지부별 토론 구상. 지역 이슈화 방법도 같이 논의. 이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8월 말~9월 : 학생인권조례 홍보, 10월 이후 : 조례 제정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투입. 11월 3일(학생의 날)과 연동할 수도 있음. 이참에 지역사회(가령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와 제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조직화에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포섭하는 것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서명도 좋고, 주민 발의·청원도…가을 중 집회는? 자세한 논의 필요. 지역 번화가에서 매주 1인 시위. 학교에서 확성기 등으로 고함치기. 전단, 배지 등 배포. (가능한 지역이라면) 집회나 간단한 행진, 피케팅 등

- 체벌

서울에서는 TFT 꾸려짐. 체벌을 대체할 생활지도 방법 등에 내용적으로 개입해야 함. “체벌이 금지됐다. 아직도 때리는 교사가 있나? 학내시위 하자!”는 내용의 전단지 배포도 구상

<주요 일정>
8월 : 지부 차원에서 내용 토론·검토·제작, 다른 단체들에 제안·설득
9월 : 캠페인·서명운동, 운동본부 구성
10월 : 홍보
11월(수능과 G20이 있다) : 학생의 날 겸 학생인권조례…행사

- 기타 교육 의제
이슈파이팅을 좀 줄이려 했으니 너무 달려들지 말자.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이 부족.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어려움. 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필요할 듯. 자체 사업으로서 소책자 만들어서 배포 등. 이슈파이팅이나 기자회견은 활발한데 현장 조직들은 고사, 운동은 우왕좌왕.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나 참여하고 관망만 해야 할 듯

- 여성·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
서울지부 섹슈얼 팀에서 학교들의 연애 탄압 학칙과 실제 사례를 조사 중. 같이 참여하기로 함(학생인권조례와 연계도 가능할 듯). 새로운 의제 제시로 쓸 만하다는 의견. 서울지부 섹슈얼 팀에서 기획·제안서를 제출할 계획. 차별금지법, 비혼모 등은 일단 상황 파악만 해두기로 함

- 기타
· 전교조 탄압
· G20 : 질서 유지를 위한답시고 군대를 동원한다는 정보. 공안 강화 및 서울에서 하는 집회도 죄다 금지할 것으로 예상
· 조직화 사업
조직화 사업이란 무엇이고, 본회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연애 공부? 지부 활성화 자체가 조직화 사업이 아닐까?
조직화 사업 모델·방식 : 지부 별로 알맞은 방식들 얘기해보고 전국적으로 공유

<주요 일정>
8월 : 학생인권조례 밑바닥 작업·내부 토론 등
9월 : 학생인권조례 홍보 시작, 체벌금지 관련 캠페인·서명운동, 운동본부 구성
10월 : 학내 연애 탄압 실태 발표 예정, 체벌 문제 홍보
11월 : 학생의 날 행사,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집회
내년 1월쯤 인권캠프 구상

· 수원지부 연애 탄압 실태 조사 : 수원,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남양주, 시흥, 화성·오산, 평택, 충남 천안의 모든 중·고등학교 교칙에서 연애 탄압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 경기학생인권조례 대응

서명은 많이 받았음.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일정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감 김상곤이 재판 대응에만 신경 쓰고 있음
릴레이 1인 시위 : 수원역, 병점역, 중앙역 등지에서 시간 나는 사람들이 수시로 참여
경기지역 연대체 구성 : 수원촛불,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대책회의, 군포의제21, 이천YMCA, 전교조 경기지부 등 닥치는 대로 8월 안에 전부 연락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성명을 발표하던 어떻게든 움직여보자는 의견

- 수원지부 수익사업
CMS : 8월 안에 브로슈어가 나옴. 주변에 되는 대로 배포
버튼, 티셔츠 등 만들어서 팔까 생각했는데, 제작비부터 부족하여 포기
바자회 : 수원촛불 바자회. 혹은 서울지역 바자회를 물색

4. 성인장애인야학

(1) 2010년 상황
◎ 경기도 장애운동의 주체를 보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이하 장차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이하 협의회), 경기도이동권연대
◎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한 시민사회단체, 정당단체,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연대한 장차연 중심의 운동은 활성화 어려운 상황
◎ 지역 장애인 당사자 조직인 협의회 중심 활동
◎ 09년 교통약자 경기도 조례 제정 움직임에 급 결성한 이동권 연대 활동
◎ 경기도청 상대 협의회주도 활동, 그리고 경기장차연 활동으로 2010년 복지 예산 대응
◎ 지리적 위치상 주로 서울 중앙 집회에 연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택 장차연, 동두천 장차연등 지역 투쟁에 힘을 합하는 양상
◎ 지역 이동권, 활동보조인 추가 시간 등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용
◎ 4/20 투쟁
◎ 교육권 관련하여서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 경기도내 야학단위들이 모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지역조직 달성을 위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준)'조직 결성,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섭, 항의
◎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하여 열악한 상황의 야학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주)의 요구안
- 2010년 경기지역 장애성인교육 현황 및 특수교육지원의 근거
· 현재 9개 장애인 야학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 전국 장애인야학 협의회는 장애 성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경기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 부서에서 담당
· ▲ 타 지역 교육청 지원 사례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의 장애성인 교육지원 및 계획 ▲ 법적 근거 마련[참고자료5]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의 장애성인 교육지원 및 계획[참고자료4]
- 경기지역 장애인야학 현황 및 실태[2][참고자료3]

2) 경기도 장애인등록현황 및 연령별 현황 참고(2008년 12월 31일 기준)

· 2008년 12월 기준 경기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는 435,698명이며 이중 95%인 414,153명이 20세 이상의 장애성인임.
·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 장애인의 수(49.5%)는 215,67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야학시설은 에바다 장애인 배움터, 평택 장애인 야학, 새움 장애인 야학, 화성 돋을볕야학, 새날 장애인 야학, 함께 배움 야학, 동두천 장애인야학, 오산씨앗학교, 의정부 채움 누리학교 9개소가 있으며 이외에도 개설을 준비 중인 곳이 있으나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고 있음
· 경기지역의 장애인 수는 435,6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임. 현재 준비 중인 장애성인평생교육기관의 수를 합치더라도 장애성인들의 교육욕구를 받아 안기 힘들 것으로 생각됨. 이에 따라 교육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은 특수교육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업무연계차원에서 타당할 것임

5. 경기교사현장모임

(1) 사업 기조 및 목표
◎ 조직/교육 일상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하여 회원을 배가한다.
◎ 교원평가 등 구조조정에 실천투쟁을 전개한다.
◎ 현장 주체를 중심으로 일제고사 등의 경쟁/서열중심 교육 저지투쟁을 전개한다.
◎ 지역/학교 현장에서 주체형성을 위한 학생인권 사업 진행 및,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투쟁을 통해 조직화한다.
◎ (전교조)경기지부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비판을 전개와 경기활동가과 소통하며, 교육노동운동의 원칙과 실천을 대중적으로 확장한다.
◎ 경기지역 교육노동운동의 실천적 강화를 위해 2010년 하반기 전교조 지부선거에 적극 대응한다.

(2) 사업 내용
◎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대응 투쟁
○ 일제고사 폐기 투쟁
- 상황 : 7월 학업성취도평가(초6, 중3, 고2)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의 경우 공식적인 성적 공개 자료가 됨. 성과급과 연동 등이 예고된 상태. 3월 진단평가의 경우 경기지역은 미실시 예정, 7월 일제고사 투쟁으로 집중
- 투쟁 계획
· 교육주체(학부모, 청소년, 교사) 조직화
· 일제고사 청소년·학부모·교사 거부선언 조직
· 일제고사 당일을 전후하여, 체험학습 조직 및 참여
· 이후 성적 공개 거부 운동 진행.

○ 교원평가 대응 투쟁
- 상황
· 학교 현장에서 교평은 국회 법제화와 일단 무관하게 3월 부터 시행 : 2월까지 각 지역 교육청 규칙 제정 및 학교단위 평가 표준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고, 학교에서는 3월중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평가 업무시작 예상
· 교과부에 의해 강행되는 2010년 교평은 현장 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중 교사들과의 갈등 진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학생만족도 조사와 연말의 동료교원평가는 일정하게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 투쟁 계획
· 교원평가 반대 광고
· 교내 평가기구 참가 거부, 공개수업 계획서 요구 시 제출 불응 투쟁을 선전 조직함.
· 교평/일제고사 관련 학부모통신 보내기 전개
· 학생 만족도 조사 불참 운동 전개
· 동료 교원평가 불응 선언 조직.

2) 학교생활규정개정 투쟁
- 상황
· 전근대적 학교생활규정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용되고 있어,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입시/경쟁 교육 강화는 더욱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하지만 인권조례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여지는 있음
- 투쟁 계획
· 학생 조직화 사업(인권모임, 일제고사 연계 사업 등)
· 인권적 학교생활규정 지역 토론회
· 학교별 모임 조직(교사, 학생 함께)

3) 학교자율화조치/각종 자율형 학교 대응 투쟁
· 학교장 인사/전보 내신권 강화에 따른 공동 실태조사 및 파행 사례 공개 시정 요구
· 교육과정 파행 운영 사례에 대한 대응
· 방과 후 활동 등을 빙자한 초중고 보충수업, 야자 등에 대한 교사 반대 선언을 조직

4)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연대 사업
○ 학부모 사업
- 지역별 평학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학부모운동에 결합하고, 소통, 조직화에 기여
- 우선적으로, 수원/안산을 바탕으로 확대

○ 학교비정규직 사업
- 경기학비노동자와 연계하여, 현안 사업 및 조직화 공동대응, 소통체계 확보

○ 청소년 사업
-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학부모 및 연대단체 함께 고민) 등과 같은 대중 사

업과 일제고사 학생인권사업, 학교생활규정개정 사업 등을 통해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과 지역 청소년 모임 조직

6. 평등교육학부모회

(1) 활동방향
◎ 일제고사 반대투쟁과 함께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주요 투쟁과제로 설정
◎ 2010년에는 무상급식운동과 청소년인권개성운동
◎ 조례제정을 포함한 청소년인권운동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무상급식운동을 전개
◎ 고교평준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 조직강화와 확대

(2) 실천과제
◎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맞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청소년인권개선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을 전개한다.
◎ 안산지역을 비롯한 고교평준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한다.
◎ 소통체계 확립과 공동사업 기획 및 지역평학 조직을 강화・확대한다.

(3) 2010년 주요사업
◎ 일제고사 대응투쟁
- 2010년 상반기에만 3월 진단평가, 7월 학업성취도평가(초6, 중3, 고 2)가 예정, 7월 평가의 경우 성적공개 자료
- 3월 투쟁은 선전중심의 투쟁
- 7월 투쟁은 사전에 시기와 단계를 설정하고 내용과 조직 차원을 심화・확대
< 일 정 >
・4월~5월 : 일제고사 대응관련 지역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간담회 조직 등
・6월~ : 일제고사 거부 학부모, 청소년 선언 및 7월 체험학습 안내 조직화사업
・7월~ :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조직
・8월~ : 이후 성적공개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반기 일제고사 대응투쟁 준비

◎ 교원평가 반대투쟁
- 교원평가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MB의 핵심 정책
- 교평 반대투쟁 전개
- 법제화 국면에서는 교원평가반대 범대위(경기교육공투본(준))을 중심으로 법제화저지투쟁
< 일 정 >
・2월 : 교원평가 반대 선언 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월 : 경기도교육청의 교원평가 규칙 제정(협의회)에 대한 압박활동.
・7월 :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는 국면에서 다양한 대응활동 전개.

◎ 청소년 인권 개선운동
- 청소년 인권 개선운동을 교육주체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전개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

◎ 무상친환경급식운동
◎ 고교평준화 투쟁
◎ 평학 경기 공동실천 및 지역 평학 조직 강화·확대

Ⅳ. 2010하반기 및 중장기 공동 실천 과제

1. 교육 차별 철폐, 비정규직 교직원 정규직화
◎ 무상교육/무상급식/대학 등록금 인하
◎ 장애인 인권 보장, 교육권 확보
◎ 학교비정규직 교직원 정규직화

2. 경쟁 입시교육 저지, 청소년 인권 보장
◎ 일제고사/강제 보충·자율학습 폐지, 고교 평준화/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3. 교육에 대한 지배 계급의 통제·구조조정 대응
◎ 학교자율화/학교장 권한 확대 대응
◎ 교원평가/대학구조조정 대응
◎ 전교조 말살 공세 대응

4. 내부 교육 및 조직 강화·확대
◎ 교육/선전/조직 활동 강화
◎ 재정 확보
◎ 연대 활동 강화

Ⅴ. 2010년 하반기 및 중장기 공동 실천 방향

1. '한시적' 투쟁에서 '상설적' 교육운동 연대/투쟁 모색
◎ 현재 상황
-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고용안정 요구 중심 투쟁
- 단위 별 소수 활동가를 제외하고는 해당 단위 투쟁으로 인식
- 집행위원장과 단위 대표 중심 교섭 투쟁

- 공동 실천 과제는 상층 연대(전국평학, 범국민교육연대, 교평범대위) 논의 참가 수준

◎ 과제
- 참가 단위 간 정세 공유
- 공동 실천 과제에 대한 '꼼' 내부 교육
- 경기지역 포괄하는 학부모조직 건설

◎ 실천 방향
- 카페 활용(참여 단위 회원 카페 가입, 정보 공유)
- 회원 내부 교육 정례화(강좌, 소식지, 회의, 카페)
- '꼼' 부설 연구소 설립
- 지역 단위 학부모 운동 조직→경기지역 포괄하는 학부모조직 건설

2. '교섭→투쟁→선전'에서 '조사→폭로/선전→투쟁→교섭'

◎ 현재 상황
- 현안 문제에 대해 즉자적, 즉흥적 대응 경향
- 김상곤 교육감 역할/권한에 의존한 교섭 투쟁
- 성인장애야학, 학생인권조례, 임시강사, 일제고사 징계 등 개별 단위 교섭 투쟁
- 단위별 힘겨운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중 투쟁으로 발전 한계

◎ 과제
- 단위별 요구 투쟁을 공동 투쟁으로 묶어 여론화
- '꼼'이 실질적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투쟁/여론을 통한 권한 확보
- 조사/선전/여론전을 위한 내부 역량 확보

◎ 실천 방향
- 조사→폭로/선전→투쟁→교섭
- 요구 투쟁 여론화
- 언론 작업

3. 공동 실천을 위한 내부 소통/교육/선전 등 일상 활동 추진

◎ 현재 상황
- 내부 소통은 카페, 대표자 회의, 소수 활동가 정도로 회원 간 소통은 미확인
- 일상 활동은 거의 없음

◎ 과제
- 내부 조직화
- 일상 활동을 위한 조직 운영 체계 정비

◎ 실천 방향
- 규약(획칙) 마련

- 재정 확보

4. '수원'지역 중심 활동에서 다른 '시·군'지역으로 활동 영역 확대

◎ 현재 상황
- 수원 중심 활동
- 참여 단위 회원이 같은 시군지역에 있음에도 지역 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 과제
- 시군 지역 '꼼' 구성
- 시군 지역 교육 현안을 경기도교육청/도청으로 집중

◎ 실천 방향
- 지역 단위 소통
- 지역별 조직화 주체(사람, 단위) 선정

Ⅵ. 2010년 하반기 활동 방향

1. 현안 투쟁 중간 평가 및 앞으로 투쟁 방향 정리

◎ 현재 상황
- 임시강사 투쟁
- 성인장애야학 투쟁
- 일제고사/학생인권조례/보충자율학습/학생생활규정/교원평가/고교평준화

◎ 과제
- 선거 이후 대응 방안 마련
- 교육운동 상설 연대체 활동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 내부 교육/선전, 조직화

◎ 앞으로 투쟁 방향
- '꼼' 투쟁으로 자리매김
- 노조 또는 단위(전교조, 임시강사, 성인장애야학) 중심 투쟁을 지역/부문 투쟁으로 발전

2. 하반기 공동 실천 과제와 방향

◎ 현재 상황
- 성인장애야학/임시강사 투쟁 교착, 진전 불투명
- 임시강사 투쟁에 '꼼' 역량 집중
- 공동 실천을 위한 준비 미흡

◎ 과제
- 상반기 공동 실천 과제와 실천 방향, 실천 경로 마련

- 혁신(특권)학교/일제고사/학생인권조례/보충자율학습/학생생활규정/학교자치/교원평가/고교평준화 대응

<언론보도>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한다. 강원교육청은 또 교복착용 여부도 자율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외모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강원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교복은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생이 교복 착용을 원치 않을 경우 교복에 준하는 복장을 입도록 했다.예술고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집회권 보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선 학교들은 오는 19일 발표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강원교육청은 시행 초기인 만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경고 등의 물리적 제재 대신 장학사를 파견해 새로운 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향후 시행될 조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체벌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두발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까까머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내년 4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지역 학생들도 두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두발자율화를 놓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학생 두발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그동안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춘천=정동원 기자

- 학부모,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 실천 방향

- 단위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수련회를 통한 실천 방향 마련

- 워크샾→조사→폭로/선전→투쟁→교섭

Ⅶ. 하반기 공동 실천 경로

◎ 대표자 워크샾(8월)
- 현안 투쟁 지속, 개괄 평가
- 활동 방향 초안 검토

◎ 공동 실천 관련 '꼼' 내부 회원 교육
- 참가 단위별 교육
- 실천/투쟁 결의

◎ 시민 대상 선전/여론 조성 활동
- 웹, 종이, 언론을 통한 대중 선전
- 혁신(특권)학교/학생인권/교원평가/일제고사

◎ 실천/투쟁 조직
- 임시강사/성인장애야학
- 특권교육/일제고사/청소년인권침해 저지

[참고자료1] 임시강사의 부당대우 및 차별대우 현황

	2006.03.01 이전	2006.03.01 이후
휴직	- 휴직 조항 없음	-휴직 조항 없음(육아·병사 휴직을 위해 투쟁 중)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가사용제한 -병가 일수 7일로 제한 - 출산 휴가 (2002. 09 .04) 투쟁으로 받아냄	-연가사용(신규 교원으로 하여 연가 일수를 교육경력에 맞게 사용하지 못함) -병가 일수 7일로 제한 -특별휴가 사용
임금·성과급 맞춤형 복지제도	-호봉의 제한(2002년 이후 호봉급으로 하되 상한 호봉 26호봉으로 제한) -계약중 승급불인정 -성과급 미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제외	-호봉의 제한(2002년 이후 호봉급으로 하되 상한 호봉 26호봉으로 제한) -계약중 승급 불인정 -성과급 미지급 -맞춤형 복지제도 제외 - 출산휴가(90일) 사용 가능
퇴직금	-1년마다 지급 일부 -유치원 이동시 퇴직금 지급 (일방적인 지급)	-매년 사직서 강요로 퇴직금 강제 지급 일부 -유치원 이동 시 지급 강요 -전유치원 면직 3년 안에 퇴직금 받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 안 해 준다고 퇴직금정산 강요.
연구시	-연구 시범학교 운영 후 가산	-연구 시범학교 운영 후 가산점 나이스에 등록에서

범·직무연수·자격연수	점 누락 -직무연수 누락(투쟁 후 일부 지원) -자격연수 누락 -일반연수 참여	제외(일부) -직무연수 누락 -자격 연수 누락(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들의 제 교육 기회 박탈로 10~20년 동안 상위자격취득 불가) -일반연수 (일반 연수 일정을 오후에 계획하여 참여 불가능, 종일반 교사 제외하는 문구를 공문에 명시하기도 함.)
공무원증발급	-공무원증(신분증) 미발급	-공무원증(신분증) 미발급
임용	-지역 교육장, 학교장 채용 -임시강사 직급으로 계약 -전임강사 직급으로 계약 -이동 없이 한 유치원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짧게는 8년 근무함. 이동시 임시강사 신분이 기간제로 변경 된다고 공문화함. -매년 계약서 작성	-학교장 채용 1년 마다 재계약 -임시강사 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장은 지역교육청에 '임시강사는 보내지 마라'라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함 -타 지역으로 임의적으로 이동배치 (도교육청) -전임원감 있는 곳에 1순위로 배치 -종일반 강사로 명칭을 변경 임용 -'임시강사(종일반 강사)'로 채용 -동일 유치원에서 4년 범위 안에서 채용 -임시강사'내신권'없어 장학사 임의로 배치원거리 출·퇴근 교사의 증가와 주말 부부 증가 -매년 계약서 작성 -이외에 정규 교사가 임시강사자리에 내신을 내면 '타 학교로 이동되나' 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야기 시킴.
업무	-오전반 담당 -유치원 전반적인 업무 추진	-종일반 담당 -일부관리자의 횡포로 종일반 업무 조차 업무 분장에서 제외됨 -종일반 업무 추진 및 교무실 잡무 담당(일부)
근무시간 근무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오전8시30분~오후4시30분	-오전 9시 ~ 오후5·6시 -오전 10시 ~ 오후 6·7시 -오전반 담당 교사는 1일 3시간 ~4시간 교육활동, 오후 담당 교사 1일 6~7시간 교육활동
근무시간 교육활동시간	-오전 9시~오후 12·1시	-오전 12시 ~ 오후 6·7시 외 야근 -오전 보결 수업 전부 담당함.

	방학	-연수 등으로 자기계발	-종일반 최소 3주 운영으로 출근 -오전반 담당 교사와 협조하여 운영하라고는 지침은 있으나 오전반 교사들의 비협조와 관리자등의 횡포로 3주이상 운영을 혼자 다하는 교사가 있음 - 방학 중 종일반 운영에 대한 수당 미지급
	토요일운영	-수업일수에서 제외	-토요일 수업 운영
포상		-교육감 이하의 표창기회부여 -각 분야에서 표창수령기회부여	-교육감 이하의 표창기회부여 -일부 교육청에서는 표창기회박탈 (종일반우수운영에 대한 상장을 정교사에게 줌)
근무처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운영 -경력 증명서 교육청에서 발급 -나이스에 경력, 포상등의 기록	-교사 책상 미비치 -원무실·종일반 교실 미배치 한 유치원에서는 교무실에서 교무 보조 역할을 함. -학교 교직원 행사(친목회, 체육행사, 친목여행, 채량휴업일) 등에서 제외됨.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함. -경력증명서 학교장으로 발급(대학 편입이 어렵고 여성부에서 발급하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불가로 사회에 나가서 설자리가 없음) -나이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누가 기록하지 않음.(최초임용일이 2000년 이전이던 모든 임시강사들이 2009년 3월 1일자로 변경되어, 연속근로 불인정, 경력증명서 발급중지, 연가불인정, 정근수당에 대한 근거 소멸등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

[참고자료2] 타지역 교육청 사례(주로 교재교구비, 사무비, 차량운영비, 강사비, 임대료)

	노들 장애인야학	민들레 장애인야학	작은자야학	밀알야학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2005	5,000만원 (초등교육과)				
2006	5,000만원 (초등교육과)		600만원 (평생교육과)		
2007	5,000만원 (초등교육과)		1,1000만원 (평생교육과)		700만원 (초등교육과)

2008	8,000만원 (초등교육과)	1,000 만원 (평생교육과)	1,300만원 (평생교육과)		1,000만원 (초등교육과)
2009	1억원 (초등교육과)	1억5,000만원 1,500만원 (초등교육과)	1억5,000만원 1,500만원 (초등교육과)	1억2,000만원 3,650만원 (초등교육과)	3,000만원 (초등교육과)
2010	1억원 (초등교육과)	1,500백만원 (초등교육과)	1,500백만원 (초등교육과)	1,500백만원 (초등교육과)	4,000만원 (초등교육과)
평생교육시설 등록	2009년12월22일	2009년 3월 27일	2009년11월 26일	2009년 12월 17일	2009년 9월 9일
비고		평생교육과-> 초등교육과 전환			
	* 평생교육시설 등록과 이전 보조금 지급사실 있음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장애성인교육 지원				

[참고자료3] 경기도 초등학교이하 학력 장애인 추정인원(2008년, 단위:명)

시군명	등록장애인	초등학교이하학력추정인원(49.5%)	성인장애인야학 개설현황
총 계	435,698	215,671	
본청계	314,823	155,837	
수원시	35,570	17,607	2
성남시	30,424	15,060	
부천시	32,759	16,216	
안양시	20,106	9,952	
안산시	28,802	14,257	1
용인시	25,893	12,817	
평택시	19,376	9,591	2
광명시	12,167	6,023	
시흥시	14,821	7,336	
군포시	9,820	4,861	
화성시	17,211	8,519	1
이천시	9,124	4,516	
김포시	9,366	4,636	
광주시	10,264	5,081	
안성시	8,937	4,424	
하남시	6,233	3,085	
의왕시	5,146	2,547	
오산시	5,356	2,651	1
여주군	5,750	2,846	
양평군	5,723	2,833	
과천시	1,975	978	
2청계	120,875	59,833	
고양시	31,630	15,657	
의정부시	17,316	8,571	1

남양주시	21,191	10,490	
파주시	14,224	7,041	
구리시	7,669	3,796	
포천시	8,241	4,079	
양주시	8,204	4,061	
동두천시	4,837	2,394	1
가평군	4,545	2,250	
연천군	3,018	1,494	

[참고자료4] 장애학생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교과부 특수교육 여건 확충 지원계획

Ⅰ.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계획

◦ 추진 목적

- 특수학교 노후화된 교재·교구 교체지원 및 장애특성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최적합한 직업교육 실시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촉진 도모

- 일반유치원에 통합된 장애유아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의 무상교육비이외에 교수-학습에 필요한 특수교육용 교재·교구의 지원을 통해 완전 무상교육 보장 및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에 대해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에 대한 교육적 욕구를 지원하고 있는 영세 야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

◦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단가	지원예산	지원비율
◦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특수학교	122교	- 시각 : 80 - 청각 : 50 - 정신,지체,정서 :30	4,600	국고100
- 일반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일반유치원	773원	3	2,319	국고100
- 장애성인 야간학교 교재·교구	장애인야학	3교	30	90	국고100
소 계	-	-		7,009	-
◦ 특수학급 설치교 편의시설 설치지원	일반학교	360교	70	12,631	국고50
합 계		1,258		19,640	

※ 특수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200억원 중 1차 교부금액(4인 음악회 행사 지원비, '05.4.11 교부) 360백만원 제외한 금액 편성

Ⅱ. 특수학급 설치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원계획

◦ 추진 목적

-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의 추진과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특수학급 설치교 360개교 대상으로 1교당 70백만원 장애인 편의 의무시설

확충 지원
- 지원방법 : 국고 50% : 지방비 50% 지원, 총지원액 : 12,631백만원(국고50%)
- 지원내용 :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 의무시설인 출입구 접근로 및 출입문, 경사로 및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복도 손잡이 등 설치비 지원 등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 등)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무시설) : 출입구 접근로 및 출입문, 경사로 및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복도 손잡이
- 사업수행주체 : 시·도교육감

부서명	특수교육지원과
업무소개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수립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지원 장애영아교육 지원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병원학교의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발표, 장애성인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1-4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정책방향

○ 학습 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지원 확대

필 요 성

◦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및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계속교육이 요구되나, 현재 장애성인 교육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미비로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추진계획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8년)
- 조사내용 : 등록여부, 운영형태, 시설종류, 수강생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09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10년~'12년)

□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

○ 평생교육기관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09)
-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발달장애성인의 요구에 적합한 독립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10년)
- 전국 16개 시·도에 1개씩 평생교육기관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1년부터)
- 우수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확대

해외 사례

◦ 일본
- 장애성인을 위한 음악, 건강, 자연, 수공 프로그램을 지역의 공민관에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장애청년교실 운영

◦ 호주
- Queensland University는 다운증후군성인을 위한 문해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LATCH-ON(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s: Hands On) 운영

◦ 미국
- 장애성인의 독립생활, 건강문제,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ILRU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에 전문가 배치

【신규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단위 : 억원)

추진연도	계	'08	'09	'10	'11	'12
특수교육 예산 총액	**77,191.8**	**12,884.6**	**13,985.8**	**15,408.8**	**16,780.8**	**18,131.8**
기 존 사 업 예산	72,135	12,418	13,402	14,406	15,431	16,478
신 규 사 업 예산	**5,057**	**466.6**	**583.8**	**1,002.8**	**1,349.8**	**1,653.8**
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517**	**10**	**4**	**116**	**178**	**209**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210	-	-	48	70	9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38	-	-	56	84	98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12	-	-	2	4	6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26**	**-**	**-**	**8**	**8**	**10**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31	10	4	2	12	3
②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2,608**	**275**	**398.3**	**521.3**	**645.3**	**768.3**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2,595	273	396	519	642	765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10	2	2	2	2	2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2	-	0.3	0.3	0.3	0.3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2	-	-	-	1	1
③ 특수교육 지원 강화	**1,932**	**181.6**	**181.5**	**365.5**	**526.5**	**676.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355	139	54	54	54	5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1,344	40	103	265	404	532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5	1	1	1	1	1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220	-	22	44	66	88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7.6	1.6	1.5	1.5	1.5	1.5

※ 총액 산출근거 : '07년 특수교육 총예산(11,453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5.4% 인상률 적용하고, 운영비, 시설비 등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적용하여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합계

[참고자료5] 성인장애인야학 지원의 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5.25 법률 제8483호]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정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

▲ 평생교육법의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전무함

▲ 1982년,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성인의 전체적인 비문해· 저학력 상황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음